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5. 12. 18.(목) 12:00 <12. 19.(금) 조간>	배포일	2025. 12. 17.(수)
담당 부서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담당자	정은선 팀장(043-880-5831) 백민경 차장(043-880-5832)

[안전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 낙상사고 방지 위해 목욕장 안전관리 강화해야

신체를 청결하게 하고 땀을 내며 피로를 해소하는 목욕장(목욕탕)에서 이용자 낙상사고가 최근 4년간 연평균 5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목욕장 위해사례 : '21년 151건 → '22년 248건 → '23년 447건 → '24년 574건 → '25년(6월) 37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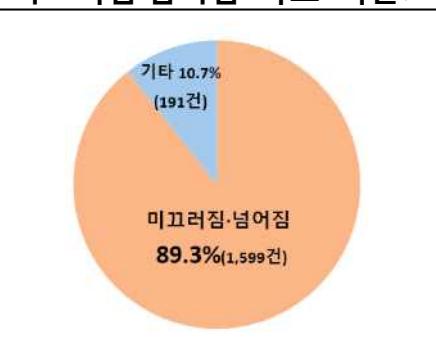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시 소재 목욕장 16개소(32개 남녀 욕탕)의 안전실태를 조사하고 목욕장 관련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낙상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목욕장 위해사례의 89.3%가 '미끄러짐·넘어짐' 피해

최근 4년 6개월('21.~'25.6.)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목욕장 위해사례는 총 1,79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목욕장 위해사례 중
미끄러짐·넘어짐 사고 비율>



이 중 '미끄러짐·넘어짐' 피해가 89.3%(1,599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목욕장은 고온다습해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위해사고를 당한 연령대는 60대 이상 이용자가 전체의 62.9%(1,107건)를 차지했다. '60대'가 23.0%(4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70대(22.6%, 397건)', '80대(15.3%, 270건)' 순이었다.

□ 탈의실 주요 장소에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미흡

위해사례 분석 결과 장소별 미끄러짐 사고가 많은 곳은 발한실*(사우나실)의 경우 ‘내부(72.5%, 116건)’, 목욕실은 ‘욕조 주변(40.7%, 66건)’, 탈의실은 ‘바닥(66.7%, 24건)’으로 나타났다.

* 발한실: 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해 발한을 돋는 시설로, ‘사우나’로 불리기도 함.

특히 목욕장 탈의실은 이용자들이 물기를 충분히 말리지 않은 채 이동하기 쉬워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었다. 특히 체중계·세면대·정수기 주변은 이용빈도가 높아 매트를 설치하는 등 낙상 방지 관리가 중요하다.

조사가 가능한 30개 탈의실의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체중계 주변의 90.0%(27개), 세면대 주변의 83.3%(25개), 정수기 주변의 23.3%(7개)에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세 장소 모두 매트를 설치한 목욕장은 한 곳도 없었다.

목욕실 내부와 탈의실을 연결하는 출입구에도 32개 목욕실(남탕·여탕 각 16개) 중 68.8%(22개)에 미끄럼방지 매트가 없었다.

<체중계 주변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미설치 사례>

설치	미설치
	

□ ‘미끄럼 주의’, ‘화상주의’ 등 안전수칙 게시 개선 필요

목욕장은 물기·온수·뜨거운 열기가 있는 공간이므로 각 장소에 맞는 적절한 안전수칙을 부착해 이용자가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목욕장 이용자의 이용실태 조사 결과, 17.4%(46명 중 8명)가 목욕실에서 나올 때 물기를 충분히 닦지 않아 탈의실에 물기가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탈의실에 ‘물기 제거’, ‘미끄럼 주의’ 등의 안내문을 게시할 필요가 있다.

장소별 안전수칙 부착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끄럼 주의’ 등 낙상 관련 표시의 경우 탈의실의 75.0%(24개), 목욕실의 29.0%(9개), 발한실의 70.6%(24개)에 게시돼 있지 않았다. 뜨거운 벽이나 발열기로 인해 화상 위험이 있는 발한실은 17.6%(6개)에만 ‘화상 주의’ 안전수칙이 게시돼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 조사 가능 32개 탈의실, 34개 발한실, 31개 목욕실 대상

목욕장의 위생·안전을 관리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빨한실 안팎에 이용자 입욕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탈의실과 목욕실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사업자 자율에 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 기초지자체들과 함께 조사대상 목욕장 등에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등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자 주의사항도 확산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목욕장 이용자 안내수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안전을 위해 ▲목욕실에서 나올 때 몸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탈의실·목욕실·빨한실에서는 바닥의 미끄러움에 주의해 이동할 것 등을 당부했다.

붙임 1. '목욕장 안전실태조사' 개요

2. '목욕장 안전실태조사' 결과
3.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분석 결과
4. 소비자 주의사항
5. 관련 법률 및 기준

물품 등의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제보 혹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해정보 신고]

- (홈페이지) www.ciss.go.kr에서 '위해정보 신고하기' 클릭
- (핫라인) 국번없이 080-900-3500



위해정보 신고



1 조사 목적

- (조사배경) 신체를 청결하게 하고 땀을 내며 피로를 해소하는 공간인 목욕장에서 낙상 등 소비자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있음.
- (조사목적) 바닥 물기 및 고온의 물·증기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목욕장 시설의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방안 및 목욕장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안전 확보에 기여

2 조사 대상

- 서울시 내 목욕장 16개소, 총 32개 욕탕(남탕·여탕)
※ 휴게공간 등이 있는 찜질방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3 조사 내용 및 방법

- 목욕장 시설의 ① 낙상 등 안전사고 위해요인 관리실태, ② 안전수칙 표시실태, ③ 목욕실 이용자의 물기 제거 여부 등 이용실태 조사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내용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안전기준 및 안전정보 검토•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IS) 위해사례 분석• 목욕실·탈의실·발한실 내 안전사고 위해요인 관리실태<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구·복도·욕탕 주변 등의 낙상사고 위해요인 유무 등• 목욕실 이용자 이용실태<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욕실에서 탈의실 이동 시 물기 제거 여부• 목욕실·탈의실·발한실 안전수칙 표시실태<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구역별 이용자 안전수칙 설치 여부 및 내용 분석	문현조사
	현장조사

4 조사 기간

- 2025. 4 .~ 7. (4개월)

1 시설 조사결과

- (탈의실) 조사 가능 30개 탈의실(15개 목욕장) 중 체중계 주변에 미끄럼방지 매트가 없는 곳이 90.0%(27개), 세면대 주변 83.3%(25개), 정수기 주변 23.3%(7개)로 나타나, 이용자가 흘린 물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음.
- 체중계 · 세면대 · 정수기 주변 모두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한 목욕장은 한 곳도 없었음.

<탈의실 내 구역별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여부>

구분	설치	미설치	계
체중계 주변	3개(10.0%)	27개(90.0%)	
세면대	5개(16.7%)	25개(83.3%)	30개(100%)
정수기 주변	23개(76.7%)	7개(23.3%)	

- (목욕실에서 탈의실로 나가는 입구) 조사 가능 32개 목욕실(16개 목욕장) 중 내부에서 탈의실로 나가는 입구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한 곳은 31.2%(10개)에 불과했음.

<목욕실 내부 입구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여부>

구분	설치	미설치	계
목욕실(남·여)	10개(31.2%)	22개(68.8%)	32개(100%)

2 이용실태 조사결과

- 조사 대상 중 목욕장 11개소 이용자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82.6%(총 46명 중 38명)는 목욕실에서 탈의실로 이동할 때 목욕실 출입구에서 수건으로 몸의 물기를 제거했으나, 나머지 17.4%(8명)는 물기를 제거하지 않거나 매트에 발만 닦고 이동해 탈의실 내부에 물기가 떨어질 우려가 있었음.

<목욕실 이용자 신체 물기 제거 여부>

구분	제거	미제거	계
이용자	38명(82.6%)	8명(17.4%)	46명(100%)

3 장소별 안전수칙 조사결과

- (탈의실) 조사 가능 32개 탈의실(16개 목욕장)을 조사한 결과 40.6%(13개)에 안전수칙이 부착돼 있었음.
- (낙상 관련) ‘미끄럼 주의’, ‘물기를 닦고 나오세요’ 등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25.0%(8개)에만 게시돼 개선이 필요했음.

<탈의실 내 낙상 관련 안전수칙 설치현황>

구분	주요내용	설치시설 수
낙상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끄럼 주의” • “물기를 닦고 나오세요” 	8개(25.0%)

- (기타 내용) 탈의실의 6.3%(3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출입 제한 요건*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했으며, 그 외 이동약자의 안전관리 및 전열기 화상 위험 관련 안전수칙을 게시한 경우도 있었음.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목욕장업자는 (가) 감염병환자로 인정되는 자(온천수·해수 목욕장으로 환자 요양시설에서의 입욕은 제외), (나)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됨.

- (목욕실) 조사 가능 31개 목욕실(16개 목욕장) 중 93.5%(29개)의 내부에 안전수칙이 설치돼 있었으며, 그 외 6.5%(2개)에는 아무런 안전수칙이 없었음.
- (낙상 관련) 목욕실의 71.0%(22개)가 ‘탕 내 미끄러움 주의 부탁드립니다’ 등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게시했음.
 - 세신침대 주변, 목욕의자 주변에는 관련 안전수칙이 없어 개선이 필요했음.

<목욕실 내 낙상 관련 안전수칙 설치현황>

구분	주요내용	설치시설 수
미끄럼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탕 내 미끄러움 주의 부탁드립니다.” • “탕 안이 미끄럽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한 목욕문화를 이루겠습니다.” 	22개(71.0%)

- (소금·오일 등 사용금지) 목욕실의 32.3%(10개)가 안전사고 예방 및 목욕실 바닥·욕조수 위생관리 등을 위해 ‘소금·오일 등 사용금지’와 같은 내용을 목욕실 출입문과 내부에 게시하고 있었음.

<목욕실 내 소금·오일 사용금지 안전수칙 설치현황>

구분	주요내용	설치시설 수
소금·오일 등 사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금·오일·식초 사용 금지” • “샤워실 안에 소금 가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 “탕에서는 미끄럼 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해 염색이나 오일, 팩, 우유 등 마사지를 금합니다.” 	10개(32.3%)

- (발한실) 조사 가능 34개 발한실(13개 목욕장) 중 70.6%(24개)가 안전수칙을 부착했으나, 29.4%(10개)에는 아무런 안전수칙이 없었음.

- (낙상 관련) 발한실의 41.2%(14개)가 바닥 위생관리와 미끄러움 방지를 위한 ‘소금·오일 등 사용금지’ 안전수칙을 게시했으나, 이용자 낙상사고의 위험을 경고하는 ‘미끄럼 주의’를 설치한 발한실은 29.4%(10개)에 불과했음.

<발한실 내 낙상 관련 안전수칙 설치현황>

구분	주요내용	설치시설 수
소금·오일 등 사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소금, 우유, 오일 사용금지” • “한증실에 소금, 물, 신문 등 물건을 반입하지 마십시오.” 	14개(41.2%)
미끄럼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끄러짐 사고 주의” • “건사우나 바닥 미끄럼 주의” 	10개(29.4%)

- (화상 관련) 발한실의 17.6%(6개)만 뜨거운 벽이나 발열기로 인한 ‘화상 주의’ 안전수칙을 설치함.

<발한실 내 화상 관련 안전수칙 설치현황>

구분	주요내용	설치시설 수
화상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상 주의, 뜨거운 벽이나 발열기 주의하세요” • “뜨거운 물 절대로 몸을 대지 마세요.” • “벽면 열기구에 몸이 닿지 않게 하시고 과열을 확인하십시오.” 	6개(17.6%)

불임 3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분석 결과

1 연도별 접수현황

- 최근 4년 6개월간('21.~'25.6.) 우리 원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목욕장 시설 관련 위해사례**는 총 1,790건이며, 매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목욕장(목욕탕) 및 사우나, 찜질방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아 해당 사례를 모두 분석함.

<목욕장 관련 위해사례 접수현황(연도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총계
위해사례 (증감률)	151건	248건 (64.2%)	447건 (80.2%)	574건 (28.4%)	370건	1,790건

* 검색기준 : 위해발생장소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으로 분류된 1,790건 대상

2 연령별 접수현황

- 연령 확인이 가능한 1,760건 중 '60대' 이용자가 23.0%(404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70대(22.6%, 397건)', '80대(15.3%, 270건)'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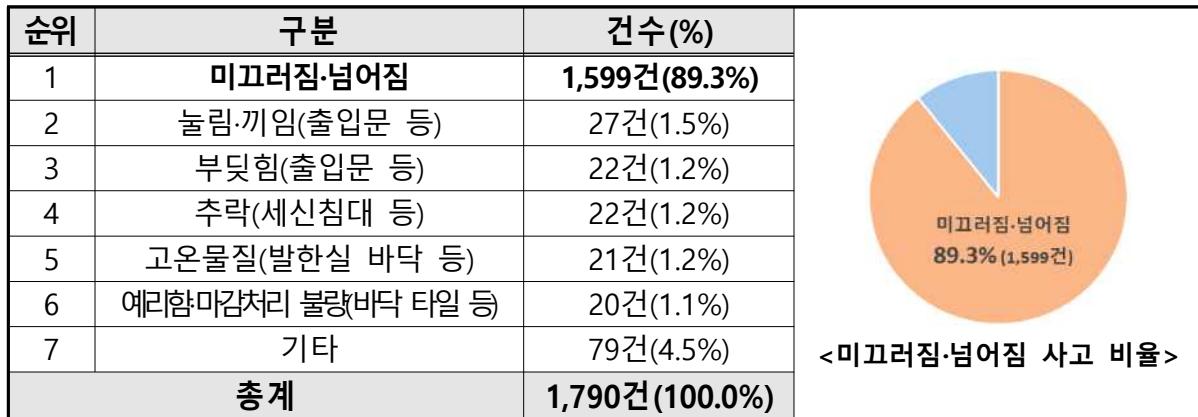
<목욕장 관련 위해사례 접수현황(연령별)>

구분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총계	
위해사례	212건 (12.0%)	63건 (3.6%)	38건 (2.2%)	38건 (2.2%)	79건 (4.5%)	1,760건 (100%)	
			총 1,107건(62.9%)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상		
	223건 (12.7%)	404건 (23.0%)	397건 (22.6%)	270건 (15.3%)	36건(1.9%)		

3 위해내용

- (위해원인) ‘미끄러짐·넘어짐’이 89.3%(1,59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눌림·끼임(1.5%, 27건)’, ‘부딪힘(1.2%, 22건)’ 등의 순임.

<목욕장 위해사례 위해원인별 접수현황>



- (위해장소·내용) 상세 위해장소 확인이 가능한 475건의 분석 결과, ‘목욕실’이 34.1%(16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발한실(33.7%, 160건)’, ‘탈의실(7.6%, 3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목욕장 관련 위해사례 접수현황(위해장소별)>

구분	목욕실	발한실	찜질방*	탈의실	화장실	기타**	총계
위해사례	162건 (34.1%)	160건 (33.7%)	40건 (8.4%)	36건 (7.6%)	12건 (2.5%)	65건 (13.7%)	475건 (100.0%)

* 찜질방은 시설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상세 위해사례 분석에서 제외함.

** 면봉 파손으로 인한 이물감(14건), 시설 화재(12건) 등

- (목욕실) 관련 위해사례(162건) 중 목욕실 내부의 ‘욕조 주변에서 넘어짐’ 사고가 40.7%(6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신침대에서 미끄러져 떨어짐(9.9%, 16건)’, 출입문 구역의 ‘목욕실 출입문에 손·발 끼임(8.0%, 13건)’ 사고 등의 순임.
- (발한실) 관련 위해사례(160건) 중 ‘내부에서 넘어짐’ 사고가 72.5%(116건)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발한실 출입문에 손·발 끼임(6.3%, 10건)’, ‘출입구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6.3%, 10건)’ 등의 순임.
- (탈의실) 관련 위해사례(36건) 중 미끄러운 바닥 등으로 인한 ‘탈의실 바닥에서 넘어짐’이 66.7%(24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체중계에서 넘어짐(8.3%, 3건)’ 등이 있음.

탈의실 주의사항

- ①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탈의실 안에서는 뛰지 말고 천천히 이동하세요.
→ 발에 물이 묻어있거나 바닥에 물기가 남아있을 경우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습니다.
- ② 목욕실에서 탈의실로 나올 때 발의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 바닥에 물이 떨어질 경우 다른 이용자의 2차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목욕실 주의사항

- ① 목욕실의 문을 열거나 닫을 때 조심하세요.
→ 손발이 끼이거나 문의 하단부 모서리에 발등을 베일 수 있습니다.
- ② 세신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미끄러짐·떨어짐 사고에 주의하세요.
→ 침대에 올라가거나 세신 중 돌아누울 때 침대가 미끄러워 떨어질 수 있습니다.
- ③ 목욕의자는 천천히 주의해서 앉으세요.
→ 의자에 앉으려다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습니다.
- ④ 욕조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욕조 주변 난간과 턱은 상시 젖어있으므로 천천히 이동해야 합니다.
- ⑤ 욕조에 들어가기 전 물의 온도를 확인하고,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절한 시간 동안만 입욕하세요.
→ 너무 오랫동안 뜨거운 물로 목욕할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발한실 주의사항

- ① 발한실(사우나실)에서는 소금·오일·우유를 사용하지 마세요.
→ 바닥이 미끄러워져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② 발한실 문의 내부 손잡이와 벽, 의자 등이 뜨거울 수 있으니 이용할 때 주의하세요.
→ 발한실 내부는 고온으로 유지되므로 달아오른 내부 시설물로 인한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 ③ 발한실의 발열기 주변은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하거나 조작하지 말고, 발열기에 물이 닿을 경우 감전·화재 우려가 있으므로 물을 뿌리거나 접근하지 않도록 하세요.

불임 5

관련 법률 및 기준 (※ 조사 관련 사항 요약)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발한실(발한실) 안에 온도계를 비치해야 하며, 발한실 안·밖에 입욕 주의사항이 포함된 게시문을 알아보기 쉬운 크기와 형태로 부착해야 함.

<목욕장 내 발한실 안전관리(시행규칙 제7조)>

구분	내용
온도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한실 안에 온도계를 비치해야 함.
안내게시문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한실 안과 밖(입구 등)에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입욕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게시문을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크기와 형태로 부착해야 함.<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 미만 또는 전신 쇠약 증세의 어린이②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인 사람③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홍조증 환자④ 노약자·임산부·고열환자 및 중증심장병 환자⑤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사람⑥ 출혈을 많이 한 사람